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공통 규정

제2.1조
목적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¹에 적용된다.

제2.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

¹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된 제품을 말한다.

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관세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종류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² 관세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12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다. 제2.16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라.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수출허가절차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출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통관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그 수출 당사국의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² 양 당사국은 이 정의가 양 당사국이 최혜국 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하여 WTO 협정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대우와 무관하다는 것을 양해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란 양 당사국이 각국의 국내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며, 그 일반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수입허가절차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통관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그 수입 당사국의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제조 상품이란 다음의 상품을 말한다.

-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재료로 구성된 상품
- 나. 동등한 상품이 신상품일 때와 비교하여 유사한 성능을 지닌 상품, 그리고
- 다. 동등한 상품이 신상품일 때 적용 가능한 보증과 유사한 보증을 지닌 상품

제2.4조 상품 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

사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분류이다.

제2절 관세 철폐

제2.5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 각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세율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세율이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이하 “최혜국”이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제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국의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제2.6조 동결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

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세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인 감축 후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7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운영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도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 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이를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한정된다.

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국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 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게 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당사국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국의 양허표 부록 2-가-1의 각 관세율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 번에 관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의 규격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도된 최종 사용이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국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각 연도의 7월 1일부터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그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제3절

특별 제도

제2.8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다음 상품의 경우,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상품의 일시 반입³을 허용한다.

가.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나. 그 영역에서의 특정한 임무와 관련된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

다.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시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상품과 시험 대상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업적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되나 그 수입 자체가 상업적 운영을 구성하지 않는 상품

라. 국제 운송에서 상품의 선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컨테이너, 포장재료 및 팔레트, 또는

마. 여행자의 개인 소지품과 스포츠용으로 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그 요청에 대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로 한정하여,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당사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다른 당사국의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³ “일시 반입”이라는 용어는 1990년 6월 26일 이스탄불에서 작성된 「일시 반입에 관한 협약」 제1장(일반규정) 제1조(정의)가호의 정의에 따라 해석된다.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제1항나호에 언급된 관련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인의 출국 시 또는 출국 전,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다른 기간 내에, 또는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당사국이 설정한 최대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또는

바. 그 상품이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 조는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입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에 규정된, 이 협정에 합치되는 그 밖의 모든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9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인쇄된 광고물이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2.10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1.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 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

드는 것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또는

다. 상품의 기술적 성능이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제2.11조

재제조 상품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13조는 재제조 상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금지나 제한에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중고 상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재제조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협정과 WTO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재제조 상품이 자국의 영역 내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재제조 상품으로 식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비관세조치

제2.12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13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14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수입허가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허가협정 제1조제4항가호에 따라 공표가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새로운 또는 수정된 수입허가절차를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모든 새로운 수입허가절차와 자국의 기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자국이 행하는 모든 수정을 가능한 경우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의 공표일 후 60일 이내에 그 통보를 제공한다.
4. 당사국이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1항부터 제5조제3항까지에 따라 WTO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새로운 수입허가절차 또는 기존 절차의 수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또는 WTO 수입허가위원회에 대한 각 당사국의 통보는, 다른 쪽 당사국 또는 WTO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되는 자료에, 수입허가의 조건이 생산품의 허용 가능한 최종 이용자를 제한하는지 여부, 또는 생산품의 수입허가 취득 자

격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6. 당사국은 신청을 하는 인과 회사 및 기관의 자격, 접근해야 할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들, 그리고 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생산품의 목록을 포함하는, 수입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자국의 허가 규칙과 절차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한다.

7.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거부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제2.15조

수출허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수출허가 절차가 적용 시에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모든 새로운 수출허가절차와 기존 수출허가절차의 모든 수정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러한 공표는 그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3.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제2항에 언급된 각 공표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의 수출허가절차 문안(그러한 절차에 대하여 자국이 행하는 모든 수정을 포함한다)

나. 각 수출허가절차가 적용되는 상품

다. 각 수출허가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1) 허가 신청 절차, 그리고

2)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 자격을 보유하거나, 투자를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특정 형태의 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신청인이 충족해야 하는 모든 기준

라. 허가 신청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마. 각 수출허가절차가 유효하게 될 기간. 다만, 그 수출허가절차가 철회되거나 새로운 공표에서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경우는 제외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수출허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당사국이 수출통제체제 또는 제재체제를 채택, 유지, 또는 이행하는 것, 또는 다자 비확산체제와 수출통제협정 및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자국의 의무 또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16조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1.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그리고 관세의 정의에 대한 제2.3조 가호, 나호 및 라호에 따라 그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을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2.17조

수출에 대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동종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도 유지하거나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제2.18조

관세평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와 선택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19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국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의 양자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비밀 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와 무관하게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2.20조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부터 2-마까지에 규정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5절

제도 규정

제2.21조

상품무역위원회

1.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고,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는 제15.3조(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관련 작업반에 위임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2.22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 당사국은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세 및 관련 사안에서 부정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2. 당사국이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부정 또는 사기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경우, 그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회합한다.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제2.23조

특혜 이용에 관한 자료 공유

1. 이 협정의 기능을 점검하고 특혜 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 동안, 또는 상품무역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세부 수입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2. 수입통계의 교환은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로부터 혜택을 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수입 및 특혜대우를 받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금액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물량을 포함하는, 세번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를 포함한다.”